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해양경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6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은 종전의 직급(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해양경비기획팀을 신설하고, 정원 5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 시스템 운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경비기획단을 두되, 경비과장·종합상황실장·해양경비기획단장은 총경으로 보하고”를 “해양경비기획팀을 두되, 경비과장·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해양경비기획팀장은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기획단장”을 “해양경비기획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구축·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7.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축·운용

제36조제1항 단서 중 “2명”을 “4명”으로, “1명”을 “1명, 연구사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3명”을 “14명”으로, “9명”을 “9명, 연구사 1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경 “21”을 “20”으로 하고, 경정 “55”를 “5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경비기획팀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경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경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5의2의 정원 2명(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공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 정원 1명(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4의2의 정원 5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4의2의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 과 · 종합상황실 · 해상교통관제 과 및 <u>해양경비기획단을 두되,</u> <u>경비과장 · 종합상황실장 · 해양</u> <u>경비기획단장은 총경으로 보하</u> <u>고,</u> 해상교통관제과장은 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제6조(경비국) ① ----- ----- --- <u>해양경비기획팀을 두되, 경</u> <u>비과장 · 종합상황실장은 총경</u> <u>으로</u> ----- ----- --- <u>기술서기관으로, 해양경비</u> <u>기획팀장은 경정</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해양경비기획단장은 다음 사</u> <u>항을 분장한다.</u>	⑤ <u>해양경비기획팀장</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① · ② (생 략)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u> <u>축 · 운용</u>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u>	14. <u>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구</u>

스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 17. (생략)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해양오염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1. (생략)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2명(7급 1명,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

축·운영

15. ~ 17. (현행과 같음)

⑤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4명

1명, 연구사 2명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u>13명</u>(7급 2명, 8급 2명, 9급 <u>9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⑥ (생략)	----- ----- ----- ----- <u>14명</u>----- ----- <u>9명, 연구사 1명</u>----- -----. ⑤·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경			<u>21</u>	<u>20</u>	-1
경정			<u>55</u>	<u>56</u>	+1
	•		•	•	
	•		•	•	